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3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남준 · 박민규 · 허종식
한준호 · 모경중 · 조계원
송영길 · 이학영 · 김정호
정준호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조건부 동의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의에 동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의 조건에 위반하여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조건부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조건부 동의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의에 동의할 수 있다.</u> <u>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의 조건에 위반하여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u>

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